

의안번호	2205750
의 퇴 인	정성국 의원
회 답 일	2024.12.05.
추계번호	24C5311

직업교육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00만원, 2027년 3,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0	—	—	—	—	50	10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안 제10조)	30	30	30	30	30	150	30
계	80	30	30	30	30	200	40

주: 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체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정책의 효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적인 추진과 직업교육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안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5. 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기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량규정
		(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항)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8조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 추진, 교원역량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업교육센터	제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무규정
		(제4항) 그 밖에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안 제9조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제1항)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실시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직업교육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재량규정
5	안 제10조 (현장실습 지원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산업체는 전문직업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1조 (직업교육교원)	(제1항) 직업교육기관은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을 갖춘 직업교육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교원이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및 제2항의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2조 (산학연 협력)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산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체 수요 등을 반영한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외의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및 현장성 높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안 제13조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 체계)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육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9	안 제15조 (교육과정의종류)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초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전문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 (제2항)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는 학생의 취업 및 직무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도제교육 등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2. 자격 취득 교육과정 3. 외국 기관과의 공동 교육과정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제3항)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따른다.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2조제2호가목 따른 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대학 등과 협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또는 학교별로 채용 전제 및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은 소속 학교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단,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산업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11	안 제17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의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19조 (평가 및 인증)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 전문기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인정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전문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평가·인증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23조(평가 및 인증)	(제1항)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4	안 제25조(지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을 지도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재정지출 증가분에 대한 산출이 곤란
2	안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8조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센터의 설치 규모 및 구체적 수행 사업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¹⁾
4	안 제9조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	
5	안 제10조 (현장실습 지원 등)	—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직업계고에 대한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과 기업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이수학생에 대한 훈련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고 ²⁾ , 대학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현장실습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음 ³⁾ 을 고려할 경우 제정안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해당 업무가 위탁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업 및 필요 예산 등에 대한 추정 곤란
- 2)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으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채용까지 연계하고 기업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것으로, 2024년도 교육부 예산 기준 기업현장교사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12,450백만원, 기업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이수학생 교육비용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26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3)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4)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보통교부금 산정시 대상 학교 운영비 소요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
- 5)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및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 6)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1조 (직업교육교원)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및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제정안의 ‘산업체 경력을 갖춘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와 유사한 제도로 볼 경우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에 산학겸임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의 교육 다양화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임 ·다만, 제정안은 직업교육교원의 채용주체를 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이 채용 지원 대상 학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교원의 채용·연수비용을 지원할 대상 기관의 범위 및 채용규모, 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함
7	안 제12조 (산학연 협력)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역량 강화 및 현장성 높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다만, 직업계고에 대해 산업구조 및 교육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를 개편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⁴⁾, 대학에는 산학연협력을 고도화하고 기업-전문대학 간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이 지원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3조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육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제정안은 설립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현시점에서 관련 재정수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5조(교육과정의종류) 안 제16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하여금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가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과군별 성취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교원의 자격 및 양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7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업교육 교원 및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함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정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습생 부당대우에 대한 권익 구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있음
11	안 제19조 (평가 및 인증)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가전문기관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등에 따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전문대학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구, 조직·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평가인증하고 있음
12	안 제23조(평가 및 인증)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 ·교육부는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한 뒤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도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 평가 인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⁶⁾
13	안 제25조(지도 및 지원)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을 지도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나,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및 ②직업교육 실시 현황 조사·분석(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직업교육 기본계획) 5년 주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 수렴 비용 등 제반 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중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유사·중복 계획 간소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과 별개로 제정안에 따라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신규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
-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는 안 제6조제5항⁸⁾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연구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제6항⁹⁾에 따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 소관 부처의 기본 운영비로 수행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교육부와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주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
-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 전반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추계 1차 연도(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안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9) 안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비용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은 안 제9조¹⁰⁾에 따라 교육부에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단가는 교육부와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교육부와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연구주제	사업연도	연구비용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2017	50
교육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2020	27
"	평생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	50
고용노동부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2021	50
"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달체계 개편 방안	"	55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안 제9조(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6조제6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표 3]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0	-	-	-	-	50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9조)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비용은 교육부와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연평균 3,000만원)

[표 4]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연구주제	사업연도	연구비용
교육부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및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방안 연구	2019	30
고용노동부	기발굴 신직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1	30
"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재학생 직업훈련 지원 강화 방안	"	30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안 제10조)	30	30	30	30	30	15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00만원, 2027년 3,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6]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50	—	—	—	—	50	10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안 제10조)	30	30	30	30	30	150	30
계	80	30	30	30	30	200	40

주: 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 및 연구방향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